

의안번호	2213801
의 퇴 인	정춘생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.
추 계 번호	25C5762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2조의4 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	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신청, 동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, 양 및 내용 등의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음 ※ 이중돌봄: 자녀·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·조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의 질병, 장애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상황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의4 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, 장애인 보조기기,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시 부양의무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지원이 신설되거나 기존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활동지원 급여)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~15등급의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

-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에 2조 5,323억 4,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(급여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 67%)
- (장애인 보조기기)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·보조기, 전동휠체어·스쿠터 등을 교부
 -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에 보조기기 교부 및 중앙·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을 위하여 50억 7,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(보조기기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 67%)
- (장애인 거주시설 지원)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이며,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(신축·증개축·개보수 등)을 지원하고 있음
 -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51억 4,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(국고보조율 50%)
- 그러나, 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중돌봄 상황 고려에 따라 확대될 서비스의 양과 적용 대상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